#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57 발의연월일: 2023. 2. 1.

발 의 자:최연숙・김상훈・김석기

박대출 • 이태규 • 조명희

최영희 • 이인선 • 장동혁

권은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평상시 감염병 대응 관련부서와 지원인력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질

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

#### 법률 제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대상과 범위,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
	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 장 또는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된 임ㆍ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
	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
	급하여야 한다.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u>
	염병 교육의 대상과 범위,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교육과

 정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